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7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김민철・민형배・오영환

임오경 · 김철민 · 한병도

어기구 · 김홍걸 · 서영교

이용호 · 민홍철 · 장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고,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올해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잦은 이상기후(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한편,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지역에 영농의사가 있는 새로운 농업인을 유인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② (생 략) 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 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1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 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 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 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 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 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	
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	
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